

수산 이슈포커스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당면문제와 시사점 | 박지훈 연구위원

제주어류양식 어업경영자금 지원확대 필요성 | 장유준 책임연구원





수산업안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슈포커스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2026. 06

이슈포커스 2026-02호

수산 이슈포커스

Topic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당면문제와 시사점

| 박 지 훈 연구위원

■ 제주어류양식 어업경영자금 지원확대 필요성

| 장 유 준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당면문제와 시사점

박 지 훈 연구위원
(shjpark@suhyup.co.kr)

목 차

요 약	3
I. 검토 배경	6
II.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주요 현황	7
III.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당면문제	13
IV. 시사점 및 정책제언	26

요 약

검토 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동해 주 어획 어종인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하면서 오징어 생산 의존도가 높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직격탄
- 살오징어 급감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수년간 정상적인 출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난 수준의 경영난에 처해 도산 위기 직면
- 이에,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주요 현황

- 최근 10년 중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 2만 6,473톤에 달하던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생산량은 2025년 522톤으로 98.0% 크게 급감
 - 생산량 급감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주 어획 어종인 동해 오징어가 씨가 마른 탓
- 최근 10년 동안 어업활동이 왕성했던 2015년 출어 횟수는 연 117회에 달했으나, 2024년 출어 횟수는 94.0% 감소한 단 7건. 어업활동이 없다고 봐도 무방
- 2015년 연 5억 원에 달하던 경영체순이익은 2024년 약 △6,500원 만원으로 112.0%↓(감소)
- 흉어로 인한 조업 포기 현상으로 연료비와 출어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
 - 연료비 : ('15년) 연 187,556천 원 ⇒ ('24년) 12,332천 원, 93.4%↓(감소)
 - 출어비 : ('15년) 연 480,802천 원 ⇒ ('24년) 15,364천 원, 96.8%↓(감소)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당면문제

- 극심한 오징어 흉어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전체 도산 위기 직면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오징어 조업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 수년간 고수온·어장 미형성 등으로 정상 출어가 어려운 상황
 - 연속된 어획 부진 상황에서 조업에 상관없이 고정비용 지출 누적,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재난 수준의 경영난에 처해 도산 위기 직면
- 어업인 법적 기준 불충족으로 제도적 지원 혜택 배제
 -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법적 기준은 통상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여부로 확인
 - 그러나, 오징어를 주 조업으로 하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어업인 법적 기준인 ‘조업 일수’와 ‘위판액’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경영 부실 어업인에 대한 퇴로 부재
 - 어업인들은 어획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어선 감척 신청하고 있으나, 조업실적이 없어 어선 잔존가치만 지원받고 폐업지원금은 제외되고 있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
 - 특히, 계류 중인 장기 미출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감척 신청 조건(위판 120만 원 실적, 1회 출어)이 오히려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어선 정기검사 비용 발생)을 가중시키는 모순 발생
 - 설령, 현행 감척 참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감척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 구조 자체가 또 다른 장벽
- 어업규제로 인한 안전사고 사각지대 발생
 -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선미식이 일반적이거나 2001년 7월 30일 이후 선미측 어선에 대한 신조·개조 법적으로 규제
 - 문제는 현측식 조업방식에서 사망사고 집중적 발생. 안전사고 사각지대인 셈
- 수산정책자금 상환 도래 어업인 금융 부담 가중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수년간 미출어로 인한 어업인 자격(연간 60일 조업) 미달로 제도상 어업경영자금 회수 및 상환 연기 불가

■ 시사점

- 도산 위기에 직면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
 - 정책 방향 : ①긴급경영안정자금 계속 지원 및 상환 유예, ②정부차원의 동해안 오징어 어항부진 피해 실태조사 실시, ③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제정), ④홍어 관련 피해지원직불금 신설 및 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개발, ⑤어선 기관 개방검사 비용 보조 지원
- 일시적 수산인 자격 미달 어업인에 대한 자격 유지 필요
 - 정책 방향 : ①수산업·어촌기본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개정, ②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및 직불금 지급
- 일시적 수산인 자격 미달 어업인에 대한 자격 유지 필요
- 경영부실 어업인에 대해 퇴로, 활짝 열어줘야
 - 정책 방향 : ①일시 집중·대거 감척, ②감척 우선 대상 선정(평가 기준 개선), ③계류 중인 장기 미출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해 감척 신청 장벽 완화(120만원 위판실적, 1회 출어 ⇒ 조건 폐지)

-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한 선미 경사로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개선 필요
 - 정책 방향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나 제한 규정 삭제
- 극심한 흥어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에게 금융 부담 덜어줄 필요
 - 정책 방향 : ①수산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상환 유예, ②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어업일수 기준 완화(60일→30일), ③한시적 보험료 납부 유예

I 검토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동해 주 어획 어종인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하면서 오징어 생산 의존도가 높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직격탄

* 지난 57년간(1968년~2024년) 동해안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2.04℃로 서해(1.44℃)와 남해(1.27℃)보다 크게 상승

- '90년 대 25만 톤을 넘어가던 살오징어 생산량이 2025년 3만 톤으로 급감
 - 살오징어는 2010년 중반까지 매년 15만 톤 이상 생산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중요한 어종이었으나, 2015년 이후 급감하면서 최근에는 5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의 영향으로 2009년 5만 7,000톤에 달하던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생산량은 2025년 522톤으로 99.1% 크게 급감
 - 동기간 연근해어업 전체 연평균생산량 증감률이 -0.7%인 데에 반해,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연평균생산량 증감률은 이보다 -20.3%p 높은 수치인 -19.6%

살오징어 급감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수년간 정상적인 출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난 수준의 경영난에 처해 도산 위기 직면

- 동해안 고수온으로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지난 3년간 출어 포기하고 있는 실정
 - 최근 3년 출어 일수는 척당 평균 2023년 8일, 2024년 4일, 2025년 "0"일*
 - *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출어 일수 제공자료
- 최근 수년간 이어진 극단적인 조업 부진으로 동해구중형트롤 선원들 이탈 현상 지속 발생
- 계속된 어획 부진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 선원임금, 보험료, 정책·일반 자금 이자 등 매년 수천만 원의 고정비용 지출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이에,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적인 지원·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주요 현황

1. 어업조업 현황

1) 생산량 추이

▶ 최근 10년 중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 2만 6,473톤에 달하던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생산량은 2025년 522톤으로 98.0% 크게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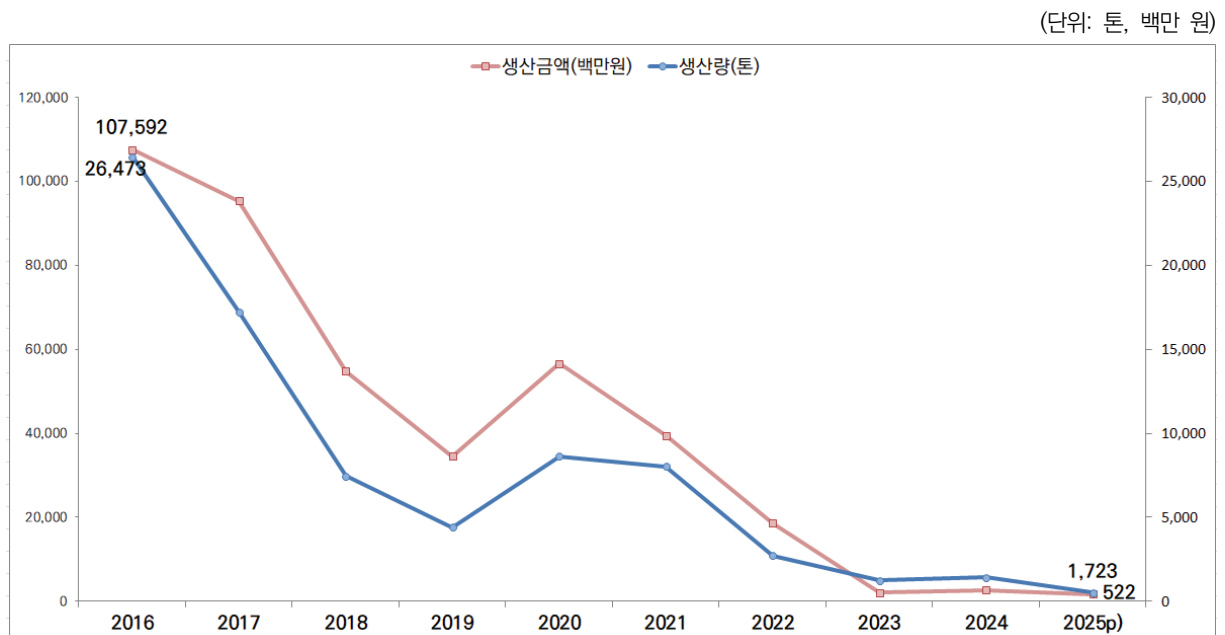
○ 동 기간 중 어업생산금액도 최고조였던 2016년 1,076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추락

▶ 동 기간(2016년~2025년)의 연평균생산량 감소율은 -35.4%로 연근해어업 전체 연평균생산량 감소율(0.8%)보다 -36.2%p 높은 수치

○ 최근 10년간 연평균생산량 감소율

- 연근해어업 전체 : ('16) 907,580톤 ⇒ ('25년) 977,648톤, 0.8%↑(증가)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16) 26,473톤 ⇒ ('25년) 522톤, 35.4%↓(감소)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생산량 추이(2016~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

■ 생산량 급감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주 어획 어종인 동해 오징어가 씨가 마른 탓

- 오징어의 급감은 해수온의 상승으로 인한 동해의 주 어획 어종의 변화에 기인
 - 최근 57년간(1968년~2024년)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는데, 해역별로 동해가 2.04℃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서해 1.44℃, 남해가 1.2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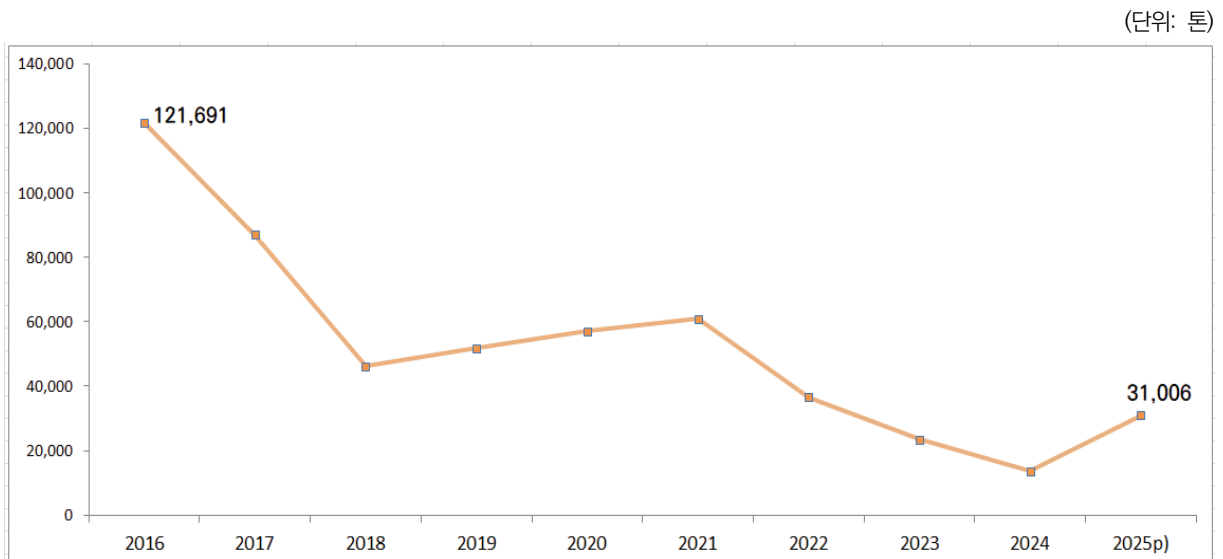
* 국립수산물과학원(2025.4), '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 해수온 상승으로 동해 주 어획종인 오징어가 북한해역과 서해·남쪽으로 이동하고 대신 난류성 어종인 방어류, 복어류, 다랑어류의 생산량이 느는 추세

■ '90년 대 25만 톤을 넘어가던 살오징어 생산량이 2025년 3만 톤으로 급감

- 살오징어는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15만 톤의 어획 실적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 매우 중요한 어종이었으나,
- 2000년대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이후 급감하면서 최근에는 5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 실적(3만 1,006톤)을 기록

【살오징어 생산량 추이(2016~2025)】



자료: 국가데이터처,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

2) 출어 현황

▶ 최근 10년 동안 어업활동이 왕성했던 2015년 출어 횟수는 연 117회에 달했으나, 2024년 출어 횟수는 94.0% 감소한 단 7건. 어업활동이 없다고 봐도 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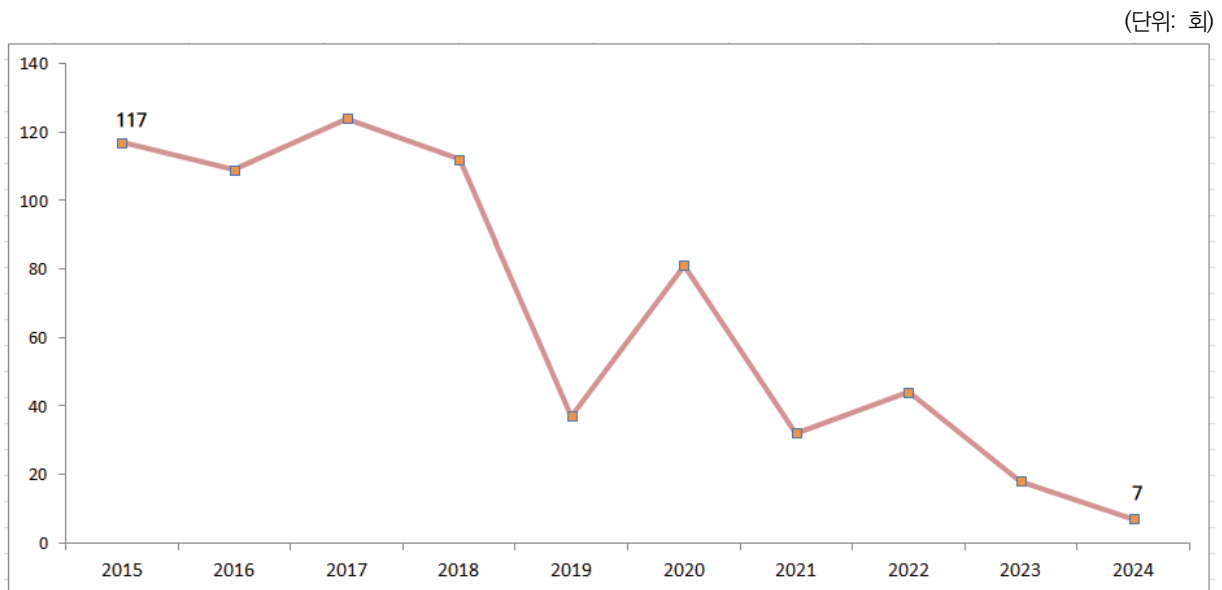
- 동기간 근해어업 전체 출어 횟수는 연평균 2.6%* 증가한 데 반해 동해구중형 트롤어업의 출어 횟수는 연평균 16.9% 감소

* 근해어업 전체 출어 횟수 : (2015년) 55회 ⇒ (2024년) 69회 [국가데이터처,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 동해 오징어 흥어로 어업인들이 출어 포기하는 상황 지속 발생

- 출어 시 선원임금, 출어비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채산성이 없는 어장 형성으로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출어 횟수 추이(2015~202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

2. 어업경영 현황

1)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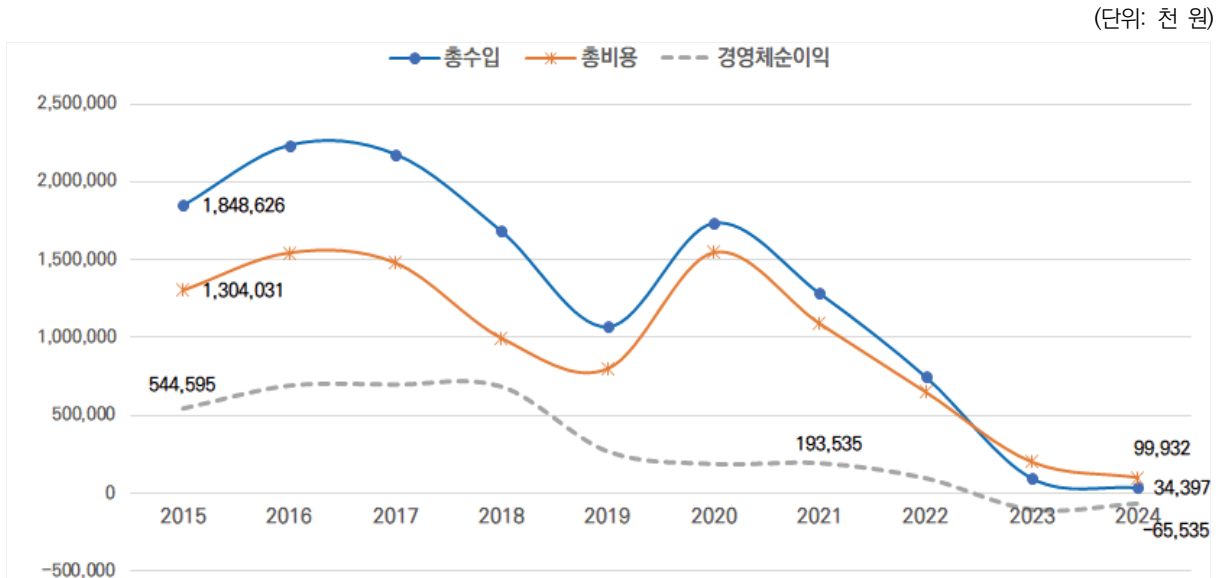
▶ 2015년 연 5억 4,460억 원에 달하던 경영체순이익은 이후 지속 감소하다 2024년 약 △6,500만 원으로 -112.0% 감소

○ 경영체순이익 : (2015년) 544,595천 원 ⇒ (2024년) △65,535천 원, 112.0% ↓(감소)

▶ 최근 2년(2023년~2024년)간 순이익 적자 지속.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구조

○ 경영체순이익 : (2023년) △105,332천 원/ (2024년) △65,535천 원
 - 2023년 : 총수입 95,628천 원, 총비용 200,961천 원
 - 2024년 : 총수입 34,397천 원, 총비용 99,932천 원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주요 경영실적 추이(2015~2024) 】



주: 경영체순이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
 자료: 국가데이터처,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

2) 순이익률 추이

▶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순이익률 2022년까지 최소 10%~최대 30% 내외로 유지하다, 이후 급격하게 감소 추세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순이익률 : (‘15년)29.5%⇒ (‘20년)10.9%⇒ (‘24년) -190.5%

▶ 2023년부터 순이익률 “-(마이너스)” 2년 지속, 2024년 순이익률 -190.5%*로 출어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

* 2024년 총수입 34,397천 원, 경영체순이익 -65,53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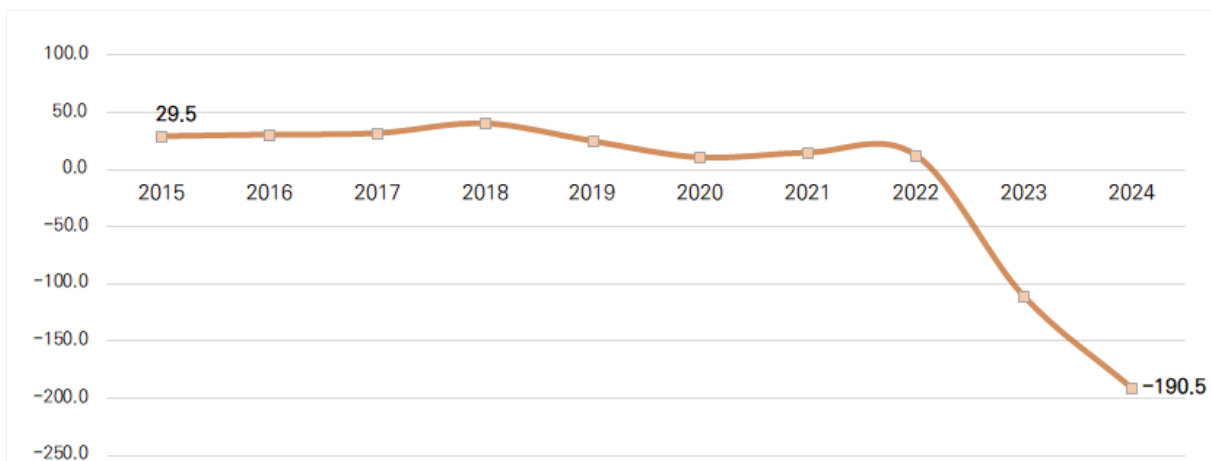
○ 이는 근해어업 전체 평균 순이익률(2024년) 14.4%*와 대조적으로 근해어업 15개 업종 중,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순이익률 최저 기록

* 2024년 총수입 1,168,206천 원, 경영체순이익 167,679천 원

○ 생산량 감소와 선원임금, 연료비 등 출어비 증가로 총수입에서 실제 남는 수익이 없는 상황 ⇒ 조업 효율성 제로(Zero)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순이익률 추이(2015~2024) 】

(단위: %)



주: 순이익률은 경영체순이익에서 총수입으로 나눈 값
자료: 국가데이터처,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

3) 주요 경영비용 추이

▶ 홍어로 인한 조업 포기 현상으로 연료비와 출어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

- 최근 10년(2015년~2024년) 동안 연료비와 출어비가 급격히 감소
 - 연료비 : ('15년) 연 187,556천 원 ⇒ ('24년) 12,332천 원, 93.4%↓(감소)
 - 출어비 : ('15년) 연 480,802천 원 ⇒ ('24년) 15,364천 원, 96.8%↓(감소)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주요 경영비용 추이(2015~2024) 】

(단위: 천 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

Ⅲ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당면문제¹⁾

1) 극심한 오징어 흉어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전체 도산 위기 직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주 어획 어종인 오징어 생산량 급감

- 지난 57년간(1968~2024년) 동해안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서해 1.44℃, 남해 1.27℃ 보다 큰 2.04℃로 가장 크게 상승*

* 국립수산물과학원(2025.4), '2025 해양수산물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 해수온 상승으로 동해 주 어획종인 오징어의 생산량 급감
 - 1990년대 25만 톤을 넘어가던 살오징어 생산량은 2025년 3만 톤으로 급감

【해수온 상승에 따른 동해안 어종 변화】



주: 기사 원문 : 국립수산물과학원(2025.4), '2025 해양수산물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자료: 글로벌이코노믹(2026.6.2.), '사라진 명태, 줄어든 오징어..한국 바다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 기사의 이미지 발췌

1)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을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관련 기사 내용을 참조하였음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오징어 조업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 수년간 고수온·어장 미형성 등으로 정상 출어가 어려운 상황

- 수년간 동해안 오징어의 중국어선 북한수역 썩쓸이 조업과 동해안 고수온 등으로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매년 출어 일수가 줄어들고 어획량이 감소
- 최근 3년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출어 일수는 적당 평균 2023년 8일, 2024년 4일, 2025에는 출어를 하지 못한 상황
 - 적당 평균 위판금액 : 약 2023년 3천만 원, 2024년 276만 원, 2025년 실적 없음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3개년 출어 및 어획 부진 현황(2023~2025) 】

(단위: 원)

선명	2023년		2024년		2025년	
	조업일수	위판금액	조업일수	위판금액	조업일수	위판금액
11한성호	0	0	0	0	0	0
29응진호	2	0	0	0	0	0
106심광호	0	0	0	0	0	0
7광양호	0	0	0	0	0	0
921오대호	28	110,969,300	21	109,358,900	0	0
73명천호	11	32,355,400	0	0	0	0
78금강호	21	89,746,400	0	0	0	0
77금강호	36	239,668,000	21	57,025,700	0	0
7동선호	0	0	0	0	0	0
2두영호	0	0	0	0	0	0
양진호	0	0	0	0	0	0
진양호	0	0	0	0	0	0
101영진호	0	0	0	0	0	0
107삼성호	20	40,383,100	19	27,729,400	0	0
210명진호	0	0	0	0	0	0
101명진호	3	3,300,000	0	0	0	0
장원호	0	0	0	0	0	0
경양호	22	60,648,500	20	48,239,500	0	0
동진호	0	0	0	0	0	0
적당 평균	8	30,372,142	4	2,755,447	0	0

자료: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제공자료

▶ 최근 수년간 이어진 극단적인 조업 부진으로 동해구중형트롤 선원들이 모두 이탈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연간 5개월가량 조업하는 어업으로 간부 선원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어선에 승선해 조업

- 하지만, 조업 부진으로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서만 대기 수당을 지급하며 선원을 유지하려 했으나 기간이 길어지며 이들도 모두 이탈
- 향후 오징어 어획량이 늘더라도 선원 구인난으로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 연속된 어획 부진 상황에서 조업에 상관없이 고정비용 지출 누적,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재난 수준의 경영난에 처해 도산 위기 직면

- 주 어획 대상인 살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업인들은 연속된 어획 부진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손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
 - 주요 13개 근해업종의 순이익률 변동성(최고점-최저점)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순이익률 변동성이 231.3%p로 가장 크게 발생, 타 업종 대비 경영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순이익률 기준 업종별 변동성(최고점-최저점) 동향】

(단위: %p)

구 분	'99년 이전	'00년~ '10년	'11년 이후~ '24년	최근 5년 경영 상황
주요 근해어업평균	14.0	10.4	17.2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3.7	14.1	39.7	오징어 등 어획 부진으로 경영실적 저조 적자 경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25.6	8.0	36.5	
대형트롤어업	25.3	53.7	58.1	오징어 등 어획부진으로 경영실적 저조 적자 지속, 경영난 심각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41.6	16.7	13.5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9.5	17.8	231.3	동해안 및 오징어 어획 부진, 각종 어업규제로 경영 실적 저조, 적자 지속, 경영난 심각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33.6	16.1	24.4	삼치 등 일부 어종의 어획이 양호하여 비교적 안정적 경영 실현
대형선망어업	27.7	21.5	33.7	-
기선권현망어업	45.3	25.4	31.2	포장단위 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세 진입
근해안강망어업	35.4	21.8	26.2	-
근해채낚기어업	37.7	27.8	44.6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경영 실적 저조 적자 지속, 경영난 심각
근해자망어업	25.5	14.5	23.7	-
근해연승어업	27.7	11.7	20.4	-
잠수기어업	14.8	26.1	8.1	-

자료: 국가데이터처,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

- 이러한 연속된 어획 부진 상황에서 어업 소득 없이 출어 대기 선원임금, 보험료, 정책자금 이자 등 고정비 지출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재난 수준의 경영난에 처해 도산 위기에 직면
 - 어기 출어를 위한 승선원 11명의 최소 생계비를 선주가 보장해야 선원이 출어를 대기하기에 선주가 선원 급여 2021년 2022년 각 3억 원, 2023년 2억 원을 경영 적자에도 선원 확보를 위해 생계비로 지급
 - 동해구중형트롤어선 대출(부채) 적당 9.2억 원, 년 이자 및 어선 보험료 등 고정비용 연간 7.3백만 원 지출로 최근 5년간 수익 없이 고정비용만 누적

【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적당 연평균 지출 고정비용(2025) 】

(단위: 백만 원)

대출금(부채)			적당	연간 평균 고정비용			
정책대출	상호대출	계	평균 대출액	대출이자	보험료	기타	계
4,353	13,054	17,407	920	46	17	10	73

자료: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제공자료

- 특히, 선박검사 비용도 경영압박으로 작용
 -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출어 포기로 장기간 조업을 하지 않은 적지 않은 선박이 조업을 위해서는 기관개방검사를 받아야만 출어가 가능
 - 기관개방검사에는 6,000만 원 가량(상가료 1,000만 원 포함)의 비용이 발생하기에 경영난이 심각한 어업인은 기관개방검사 비용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 이 비용을 모두 감내하고 조업을 나갔는데 어획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경영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것
- 조업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인건비 및 조업을 위한 고정비용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어업종사자와 가족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 초래

2) 어업인 법적 기준 불충족으로 제도적 지원 혜택 배제

■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법적 기준은 통상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여부로 확인

- 어업인경영체등록, 수산정책자금, 수산공익직불제 등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 법적 기준은 통상 현행 수산업·어촌기본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어업인 기준으로 적용
- 수산업·어촌기본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어업인”이라함은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

《 수산업·어촌기본발전법(어업인의 정의)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어촌기본발전법(검색일 : 2026.06.24.)

■ 그러나, 오징어를 주 조업으로 하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 부진으로 수년간 출어를 못 해, 어업인 법적 기준인 ‘조업일수’와 ‘위판액’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살오징어 어장 미형성으로 2022년에는 연평균 조업일이 25일만에 그쳤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 지속

- 이에 따라 연간 60일 이상 출어 미달 및 연간 120만 원 위판 무실적으로 어업인으로서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직면

■ 이로써 감척, 직불금, 정책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 어업인 기준의 미달은 어업인경영체등록, 어업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 특히 수산정책자금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금도 연기와 대환불가로 연체자로 전락, 경매에 직면하고 있음
 - 실제 현 동해구중형트롤어선 6척이 경매가 진행 중이며, 이 중 3척은 이미 경매된 상태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정부 지원 적용 여부 】

지원 구분	지원 조건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정부 지원 적용여부
어업인경영체등록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	배제(증명서 미발급시 지자체 지원금, 수산자원직불금 등 기본 지원 신청 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	배제
어선감척사업(자율감척 신청)	어업허가 3년간 소유 또는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보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또는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최근 조업실적 부족으로 감척 신청단계에서 불리. 단 어업허가 연간 3년간 소유 기준에서는 대상 기준 적용됨)
수산직불금지원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어업경영체등록,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있는 어업인	배제
수산정책자금 신규 대출, 대출기한 연장, 대환불가, 융자금 기한 보장	융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경영 *그렇지 아니한 경우 융자금 회수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4조 융자금의 회수)	정책자금 신규대출 불가, 대출기한 연장 불가, 대환불가, 어업경영자금 융자금 회수

자료: 각 사업시행지침 등 참조하여 작성

특히, 수산자원보호직불금 대상이나 조업일수 미달로 직불금 지원 제외

- 현 정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 직불제를 지원
 - 2021년 3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 어업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회사
지급액	• 2톤이하 소규모어선 : 150만원 정액지급 • 2톤초과(톤수별비례 직불금) : (1구간: 10톤이하) 75만원/톤, (2구간: 10~20톤) 70만원/톤, 3구간 (20톤 초과) 65만원/톤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어업허가 유효할 것 • 조업일수 60일 이상
지급요건	•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할 것 - 기본의무: TAC 할당 및 준수 - 선택의무(2개이상): ①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②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③어선감척
신청방법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구성된 단체가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직불금) 신청
사업절차	• 사업준비 →신청·접수 →사업자선정 →이행 및 점검 →자금배정 및 직불금 지급→사업정산

자료: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및 e수산공익직불서비스 참조(검색일: 2026.06.24.)

- 동해구중형트롤은 TAC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자율 휴어를 시행하고 있어 수산 자원보호직불제 대상으로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조건인 연간 최소 출어 60일 미달 및 이로 인한 어업경영체등록 불가로 직불금을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척당 3,900만 원 예상)
 - 동해구중형트롤은 2007년부터 오징어를 대상어종으로 TAC 제도에 참여해 매년 9월 중순부터 익년 2월 중순까지 5개월간 오징어만을 주 어획 어종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 7개월간의 자율휴어로 동해안 자생 저서 어종 보호와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해소를 위해 조업을 자제하고 있음

3) 경영 부실 어업인에 대한 퇴로 부재

▶ 정상 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정비용 누적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파산 직면

-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 수온 상승으로 살오징어 어획량 급감, 동해구중형트롤 어선 수년간 출어를 못하는 상황 지속
- 출어 포기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간 수천만 원의 고정비용이 들어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

▶ 경영악화에 따른 출구전략으로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 대부분이 어선 감척을 선택하고 있으나, 조업실적이 없어 폐업지원금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²⁾

- 감척 어선 폐업지원금은 3년치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5년간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조업실적이 미미해 폐업지원금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
 - 폐업지원금 산정 시 어획실적이 없어 평가액이 “0”원

《 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

- (산정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 (산정액) 개별감정평가에 의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
- 평년수익액 = 평균어획량(3년) × 평균 연간판매단가(1년) - 평년어업경비(1년)**
- * 단, 변동 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연도만큼 소급하여 기산한 3년 적용
- ** 단, 변동 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인근 비슷한 규모, 같은 종류 어업 2개 이상의 평균 적용

- 2025년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자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어선 전체 33척 중 31척이 감척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조업실적이 없어 실제 감척은 이루어지지 않음
 -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부터 2025년까지 동해구중형트롤 어선 5척만이 감척
 -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 5척 감척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미 실시

2) 2026년 2월 12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수령하는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즉, 폐업지원금 기준가격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폐업지원금이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기후변화 등 어획량의 급감한 동해구중형트롤어업과 같은 어민들이 어선 잔존가치 평가액 이외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안이 다소 해소되었음

【 근해어선 업종별 감척 실적(1994~2024년) 】

(단위: 척, %)

업종	계(비중) (‘94~’24년)	1994~ 2000년	2001~ 2007년	2008~ 2014년	2015~ 2022년	2023	2024
근해어선 계	3,046(100.0)	1,049	979	616	251	65	86
외끌이대형저인망	47(1.5)	21	22	0	2	0	2
쌍끌이대형저인망	274(9.0)	169	87	18	0	0	0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8(0.3)	0	0	2	6	0	0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7(0.2)	0	7	0	0	0	0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6(0.2)	0	6	0	0	0	0
대형트롤	49(1.6)	26	1	8	8	4	2
동해구중형트롤	5(0.2)	0	0	0	4	1	0
대형선망	115(3.8)	46	14	22	29	4	0
소형선망	81(2.7)	0	24	19	36	0	2
근해채낚기	446(14.6)	213	60	124	1	4	44
기선권현망	265(8.7)	0	92	29	109	30	5
근해자망	392(12.9)	94	171	79	18	10	20
근해안강망	467(15.3)	216	226	13	9	0	3
잠수기	13(0.4)	13	0	0	0	0	0
근해통발	308(10.1)	148	92	59	3	4	2
근해형망	51(1.7)	0	0	43	8	0	0
근해연승	413(13.6)	72	163	163	7	8	0
근해장어통발	17(0.6)	0	0	0	11	0	6
봉수망	1(0.0)	0	0	1	0	0	0
자리돔돌망	0(0.0)	0	0	0	0	0	0
근해문어단지	6(0.2)	0	0	6	0	0	0
어획물운반선	75(2.5)	31	14	30	0	0	0

주: 2025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 5척 감척 계획이었으나 미 실시. 2026년 감척시행계획에서는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5척 감척 계획 발표

자료: 해양수산부(2023),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지침 각 년도 참고

특히, 계류 중인 장기 미출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감척 신청 조건이 오히려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순 발생

- 허가 3년 미보유 장기 미출어 어선이 감척을 신청할 경우, 위판 120만 원 실적과 출어 1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
- 수년간 흥어로 인해 장기 계류 상태인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이 출어 1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선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어선검사 비용 5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

⇒ 즉,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은 흥어로 인한 경영난의 탈출구로서 어선 감척을 선택하지만, 감척을 하기 위해 오히려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모순적인 현상 발생

■ 설령, 현행 감척 참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감척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 구조 자체가 또 다른 장벽

- 현재 동해구중형트롤어선 33척이 감척 수요에 해당하나, 연간 감척 물량이 5척* 수준에 불과할 경우 전체 감척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

* 2025년, 2026년 근해어선감척 시행계획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 5척 감척 계획

- 이 기간 어업인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종 고정비 부담을 떠안은 채 감척 순번을 기다리다 경매·파산에 이를 가망성이 큼
- 이는 감척 요건을 충족하고도 '타이밍(시간)'이라는 제도적 장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인 셈

4) 어업규제로 인한 안전사고 사각지대 발생

■ 트롤어선은 그물을 끌어 올리는 조업방식에 따라 현측식(Side Trawler)과 선미식(Stern Trawler)으로 구분

- 말 그대로 현측식 트롤은 어선의 옆 방향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고, 선미식 트롤은 어선의 뒤쪽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조업방식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트롤선은 남해와 서해에서 조합하는 대형트롤(139톤 기준) 33척과 동해안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속칭 동해구중형트롤(59톤 이하) 33척이 조업 중*

* 국가데이터처, 등록어선통계

【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조업방식 】



자료: 해럴드경제, 전국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 불났다, 2016.2.15.일자 기사 원문 중 이미지 발췌

▶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선미식이 일반적이거나 2001년 7월 30일 이후 선미측 어선에 대한 신조·개조 법적으로 규제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의 나에서는 동해구중형 트롤어업 허가 어선에 대해 선미 쪽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단, 2001년 7월 30일 이전 선미 쪽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허용(현 기준 동해구중형트롤 허가 어선 33척 중 14척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선미식 조업 어선에 대한 규제는 수산자원보전의 차원에서 오징어 조업 강도를 줄이게 하고자 함에 있음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할 때, 해당 어선의 선미(船尾) 쪽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쪽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그렇지 않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시행규칙(검색일 : 2026.06.23.)

- 따라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선미식이 일반적이지만 규정상, 배를 신조하면 현측식 트롤로 변경해야 함
 - 과거 새우 어획 시, 현측식 조업방식이 유리했으나 현재 주 어획 어종인 오징어의 경우에는 선미식 조업방식이 조업 및 안정성 측면에서 효율적임

▶ 문제는 현측식 조업방식에서 사망사고 집중적 발생. 안전사고 사각지대인 셈

- 정책보험이 들어선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 어선에서 발생한 46건의 사망사고 중 98%인 45건이 현측식에서 발생
 - 선미측 사망사고는 단 1건. 이것조차 조업 중 사고와 무관
- 현측식 트롤어업 안전상의 이유로 어업인과 어선원 모두 조업을 꺼리는 상황이 되었고, 현측식의 경우 수작업이 많아 어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

5) 수산정책자금 상환 도래 어업인 금융 부담 가중

■ 현,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4조(융자금의 회수) 제13호에서는 융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
 - 단, 계절성 어업의 비어기 기간과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업할 수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융자금의 회수 유예를 승인한 기간은 동 기간에 미산입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4조(융자금의 회수) 》

[제14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에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융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계절성 어업의 비어기 기간과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업할 수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융자금의 회수유예를 승인한 기간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료: 영어자금 운용 요령(검색일 : 2026.06.24.)

■ 또한, 융자기간 연장 시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만 가능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5조에 의거,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년씩 2년 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상, 융자 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해야만 가능

《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 용자기간 연장

- 어업경영자금 용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여부, 원금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지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 어선어업 : 용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하여야함
 - 어선어업 외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1호~3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자료: 영어자금 운용지침(검색일: 2026.06.24.)

■ 그러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수년간 미출어로 인한 어업인 자격(연간 60일 조업) 미달로 제도상 어업경영자금 회수 및 상환 연기 불가 ⇒ 경매 직면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수년간 동해안 이상 고수온의 영향 등 극심한 흉어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이자, 보험료, 출어 대기 선원 임금, 어선개방 검사료 등 고정비용 지출로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경영자금 원금 상환 연장이 불가피하나, 수년간 흉어로 출어를 하지 못해 제도상 연간 조업일수 미달로 상환 연기가 불가능하고, 지원 받은 용자금까지 회수되는 상황까지 처함

■ 현재는 매년 어업경영자금 상환 유예를 승인받아 한시적으로 고비를 넘기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흉어로 금융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2023년 12월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오징어 생산업체 어업인에 대한 수산정책 자금 원금 상환 유예가 시행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2025년 1월, 2026년 1월에 거쳐 매년 만기 도래 어업인에 대해 1년씩 상환 유예 추가 승인하고 있는 상황
-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 대상으로 지원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지원 이후 계속된 흉어로 만기도래건에 대해 대출 기한을 2차까지 연장 유예됨

* 2022년, 2024년 2회에 걸쳐 동해구중형트롤 어선 척당 3천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됨

IV 시사점 및 정책제언

1) 도산 위기에 직면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흉어 지속되는 가운데, 매년 수천만 원의 고정비용 지출로 조업 여부와 상관없이 적자 지속 발생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생산량은 최근 20년 중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09년 대비, 2025년 99.1% 급감(5만 7,000톤 → 522톤)
 - 지속적인 오징어 흉어로 인한 미출어로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나, 대기 선원임금, 보험료, 정책자금 이자 등 매년 수천만 원의 고정비 지출 누적으로 어업 경영난 지속 발생 ⇒ 도산 위기 직면
 - 특히 기관개방검사 비용(5천만 원) 비용도 경영 부담으로 크게 작용
- 조업 시 적자가 더 커지는 구조로 단기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금 연체→ 대출금 회수 → 어선 등 경매에 따라 줄도산 우려
 - 특히, 단위수협을 통해 대출받은 일반·정책자금의 원금 및 이자 연체가 누적*될 경우, 대출액 전체에 부실 발생으로 수협의 동반 부실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존재
 - * 일반자금은 1개월, 정책자금은 1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가능
- 지속적인 흉어 극복의 일환인 타업종 전환도 유도하기 곤란한 상황
 -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은 조업방식의 특성상 타 어종(기름가자미, 도루묵, 대게 등) 어획이 어렵고, 현재 연근해는 어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에 어장을 선점한 업종의 반발로 인해 타 업종으로의 전환도 유도하기 곤란
 - * 동해안 연안은 연안통발, 연안자망 등이 어장을 이미 선점하여 여우 어장이 부재
- 도산 위기에 직면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필요
 - 2023년, 2024년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었으나, 더해만 가는 흉어로 인한 어업인 경영 위기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

- 양식업의 경우 재해피해 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 실시 중*이나, 어선업의 경우 지원제도 부재

* 피해율 30~50% →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 지원·개선 방향 》

- 긴급경영안정자금 계속 지원 및 상환 유예
- 정부차원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부진 피해 실태조사 실시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제정)
- 홍어 관련 피해지원직불금 신설 및 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개발
- 어선 기관개방검사 비용 보조 지원

2) 일시적 수산인 자격 미달 어업인에 대한 자격 유지 필요

■ 오징어 조업의존도가 높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법적 어업인 자격 불충족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 배제

-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산업·어촌기본발전법 시행령」제3조제2항(수산인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인”의 기준(위판액, 조업일수)*을 따르고 있어,

*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수년간 출어를 못해 어업인 법적 기준인 ‘위판액’과 ‘조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 어업경영체등록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어렵고, 어선감척사업, 수산 자원보호직불금 대상에서 배제(혹은 불이익)되고 있으며, 수산정책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기한 연장, 대환이 불가

■ 특히, 수산자원보호직불제 대상이나 조업일수 미달로 직불금 지원 배제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오징어 TAC 참여 및 자율 휴어를 시행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직불제 대상에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기준인 최소 출어 60일 미달로 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척당 3,900만 원)

- 오징어를 대상 어종으로 2007년부터 TAC 제도에 참여, 매년 9월 중순부터 익년 2월 중순까지 5개월간 오징어만을 조업하고 있고, 7개월간의 자율 휴어로 해안 자생 저서 어종 보호와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시적 흉어를 겪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어업인 자격' 유지책 요구되는 상황

- 기후변화로 인한 일시적 흉어로 고통을 받는 오징어 생산업계 어업인에 대해 60일 조업일수 및 120만 원 판매액 최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 흉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해있는 어업인은 누구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환경적 변화로 인한 출어 일수 미달로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동해 구중형트롤 어업인의 경영난은 더욱 클 것

《 지원·개선 방향 》

- 수산업·어촌기본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개정(흉어 등 일시적 재해에 대한 어업인 자격 기준 예외 단서 규정 신설)
-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 완화(조업일수 60일→30일) 및 직불금 지급

3) 경영부실 어업인에 대해 퇴로, 활짝 열어줘야

- ▶ 올해 2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조업 실적이 없어 폐업지원금 과소 산정되는 현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2026년 2월 12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 기존의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업종별 기준가격으로 전환
- 따라서 그간, 오징어 흉어로 인해 어획실적이 미미해 폐업지원금이 과소 산정됨으로써 감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현안이 다소 해소됨

■ 그러나,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감척 수요에 못미치는 감척 장벽 존재

-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부터 2025년까지 감척된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은 단 5척뿐
- 지속된 흉어로 경영난이 심한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감척 수요는 많으나*, 폐업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감, 감척 지원 대상 기준**이나 감척 평가 기준 등 감척 장벽으로 인해 감척 실적은 미미한 편
 - * 2025년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어선 전체 33척 중 31척이 감척 계획서 제출
 - ** 어업허가 3년간 소유 또는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보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또는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특히, 계류 중인 장기 미출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감척 신청 조건이 오히려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순 발생
 - 수년간 흉어로 인해 계류 상태인 장기 미출어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이 감척 신청을 하려면 위판 120만 원 실적과 출어 1회 기준을 맞추어야 하나, 출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선 정기검사비용(5천만 원)이 발생

■ 특히, 감척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척 “타이밍”이라는 제도적 장벽 존재

- 현재 동해구중형트롤어선 33척이 감척 수요에 해당하나, 연간 감척 물량이 5척* 수준에 불과할 경우 전체 감척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
 - * 2025년, 2026년 근해어선감척 시행계획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 5척 감척 계획
- 이 기간 어업인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종 고정비 부담을 떠안은 채 감척 순번을 기다리다 경매·파산에 이를 가망성이 큼

■ 감척 장벽을 완화하여, 경영난으로 도산 직전인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에 대해 퇴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오징어 어획감소로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부도가 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감척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
- 어업인들이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더라도 감척을 통해 폐업 이후에 어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

《 자원·개선 방향 》

- 일시 집중·대거 감척
- 동해구중형트롤어선 감척 우선 대상 선정(평가 기준 개선)
- 계류중인 장기 미출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해 감척 신청 장벽 완화
(①120만원 위판실적, ②1회 출어 ⇒ 조건 폐지)

4)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한 선미 경사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어업규제 개선 필요

- ▶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조업방식은 선미식이 유리하나, 선미측 어선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
 - 현재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어구·어법 규정상 선미 경사로 설치가 제한돼 있으며, 2001년 7월 30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미 경사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의 나(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의거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 어선의 선미 쪽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 제한
 - 이 때문에 잔존 어선들은 여전히 현측식 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 강도와 안전사고 위험, 심각한 인력확보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 ▶ 선미식 조업방식 어업규제는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조업 강도 저감을 위한 취지이나 현재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TAC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바, 해당 어업규제는 정부의 취지와도 이질적
 - 향후 연근해어업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으로 관리될 경우 과거와 같은 과도한 조업 경쟁이나 어획 강도는 구조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돼,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동해구트트롤어선에 한한 선미 경사로 제한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경사로 사용 허용은 △선원 안전 확보, △작업 효율 개선, △인력난 완화, △조업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생존 조건임

- ▶ 오히려, 현측식 조업방식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어 선미식 조업방식 어업규제 철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 어선에서 발생한 46건의 사망사고 중 45건이 현측식에서 발생
-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조업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측식 작업을 강제하는 현행 규제는 오히려 시대 흐름에 역행

《 지원·개선 방향 》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한해 선미 경사로 사용 허용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의 나(동해구중형트롤어업) 제한 규정 삭제

5) 극심한 흉어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에게 금융 부담 덜어줄 필요

- ▶ 연속된 어획 부진 상황에서 소득 없이 매년 수천만 원의 고정비 지출로 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자 누적,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 재난 수준의 경영난 처해,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수년간 동해안 이상 고수온의 영향 등 극심한 흉어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이자, 보험료, 출어 대기 선원 임금, 어선개방 검사료 등 고정비용 지출로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지난해 기준, 동해구중형트롤어선 대출(부채) 적당 9.2억 원, 년 이자 및 어선 보험료 등 고정비용 연간 7.3백만 원 소요로 최근 5년간 수익 없이 비용만 지출
- ▶ 조업실적(60일) 미달로 어업경영자금 회수 위기 및 융자 기간 연장이 제한돼, 단기 유동성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 연체 ⇒ 대출금 회수 ⇒ 어선 등 경매에 따라 줄도산 우려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현재 조업 시 적자가 더 커지는 구조와 담보 부족 등으로 추가 자금 조달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 현재는 매년 어업경영자금 상환 유예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승인 받아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있으나, 지속적인 흥어로 융자금 상환 여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특히, 단위수협을 통해 대출받은 일반·정책자금의 원금·이자 연체가 누적될 경우, 대출 전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수협 동반 부실로까지 이어질 위험 상존

▶ 정부의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해, 도산 위기에 직면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음

《 지원·개선 방향 》

- 일시적 흥어를 감안해 수산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상환 유예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의 어업일수(60일)에 대한 기준 완화(60일→30일)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4조 제3호의 천재지변 사유로 연장과 재약정
- 한시적 보험료 납부 유예

【참고문헌】

- 국립수산물과학원 (2025). 2025 해양수산물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제공자료
 해양수산부 (2023),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년)
 ————— (2026),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시행지침
 ————— (2024), 근해어업감척사업 시행계획
 ————— (2025), 근해어업감척사업 시행계획
 ————— (2026), 근해어업감척사업 시행계획

【기사】

- 글로벌이코노믹(2026), '사라진 명태, 줄어든 오징어..한국 바다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
 해럴드경제(2016), '전국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 뿔났다.'

【인터넷 사이트】

- 국가데이터처,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
 —————, 어업경영조사(<https://kosis.kr/>)
 —————, 등록어선통계(<https://kosis.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moleg.go.kr/>)
 해양수산부, e수산공익직불서비스(<https://www.fips.go.kr/>)

제주어류양식 어업경영자금 지원확대 필요성

장 유 준 책임연구원
(newjoon@suhyup.co.kr)

목 차

요 약	37
I. 서 론	42
II. 어업경영자금 제도 및 지원 현황	45
III. 양식업의 자금수요특성	49
IV. 제주어류양식수협 잔액장 분석	55
V. 지원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고려사항	61
VI. 결 론	69

요 약

연구배경 및 목적

- 어업경영자금은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산정책금융 제도임
 - 시설투자보다는 어업경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생산활동 유지와 경영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제주어류 양식업은 사료비, 전기료, 인건비, 종자비 등 주요 운영비 상승과 고수온, 질병, 폐사 등 기후위험 확대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양식업은 입식 이후 출하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출하 전까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매출은 출하 이후 발생하는 구조를 가짐
 - 이에 따라 비용 지출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 간 불일치가 크고, 생산비 상승이나 출하 지연, 폐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단기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어업경영자금 제도 및 공급 현황

- 어업경영자금은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임
 - 지원대상은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법인이며, 양식업경영자금, 어선 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등으로 구분됨
 - 지원용도는 시설자금이 아니라 사료비, 유류비, 전기료, 인건비, 어구비 등 경상적 운영비 부담 완화에 있음
 -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양식업 및 어선어업 등 어업인은 고정금리 2.5%, 법인은 3.0%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융자비율, 동일인당 한도, 재대출 기준 등을 통해 자금배분과 순환을 관리하고 있음
 - 경영비 규모별 융자비율은 2억 원 미만 100%,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2억 원 초과분의 8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5억 원 초과분의 75%, 10억 원 이상은 10억 원 초과분의 65%를 적용하는 구조임
 - 동일인당 융자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융자잔액 5억 원 초과자는 재대출 시 대출금액의 5%, 10억 원 초과자는 10%를 상환해야 함

- 이러한 기준은 정책자금의 순환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나, 출하 전 운영비 부담이 큰 양식업에는 단기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6년도 어업경영자금 총소요액은 7조 9,627억 원, 총공급액은 2조 9,200억 원으로 공급률은 36.7% 수준임
 - 2024년 공급률은 44.1%였으나, 2025년 36.9%, 2026년 36.7%로 낮아짐
 - 2025년 대비 2026년 소요액은 증가하였으나 공급액은 동일하게 유지됨
 - 소요액 자료는 자금배정과 운용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나, 최근 비용상승, 고수온 피해,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 등은 잔액장과 현장자료를 통해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식업의 자금수요 특성

- 양식업은 생산비 선투입 구조로 인해 상시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발생함
 - 입식 이후 어류가 출하 가능한 크기까지 성장하기 위해 일정한 양성기간이 필요함
 - 양성기간 동안 사료비, 전기료,약품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반면 판매수입은 출하 이후에 발생하므로 비용 지출 시점과 자금 회수 시점 간 불일치가 발생함
 - 따라서 자금수요는 연간 총비용뿐 아니라 월별 현금흐름과 출하 전 비용부담을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생산경비는 품종, 양식방식, 기준단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사료비와 전기료가 핵심 비용 항목으로 나타남
 - 2025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에 따르면, 양식업 건당 소요액은 품종과 양식방식에 따라 상이함
 - 어류 양식에서는 사료비가 전체 생산경비의 30~50% 수준을 차지하여, 사료가격 상승이 운전자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지속적 시설가동 특성을 고려할 때 전기료 역시 구조적 부담 요인임
 -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의 명목 융자한도는 실질가치가 하락하며,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2021년 개인 10억 원 한도는 2025년 약 8.5억 원 수준으로 감소함
- 고수온 등 기후위험은 생산위험과 자금수요를 동시에 확대시키는 요인임
 - 고수온은 폐사, 성장 지연, 질병 발생, 출하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피해 발생 시 약품비, 산소비, 폐사체 처리비, 재입식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
- 보험금이나 재해지원은 사후 보전 기능을 수행하지만, 피해 직후 운영자금 공백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일반 운영자금 외에도 긴급 운영자금, 상환유예, 재대출 조건 완화 등 정책 금융과의 연계가 필요함

■ 제주어류양식수협 잔액장 분석 결과

- 제주어류양식수협의 2024~2026년 잔액장 분석 결과, 어업경영자금이 핵심 운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 분석대상 조합원 수는 2024년 259명, 2025년 258명, 2026년 258명이며, 조합원 전원이 어업경영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건수는 2024년 2.58건에서 2026년 2.74건으로 증가함
 - 반면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24년 9억 2,989만 원에서 2026년 8억 9,572만 원으로 감소함
 - 이는 복수 대출 활용,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 한도, 담보여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 재대출 비중은 약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나 반복적 운전자금 성격이 확인됨
 - 신규대출 비중은 2024년 33.23%, 2025년 33.43%, 2026년 33.71%임
 - 재대출 비중은 2024년 66.77%, 2025년 66.57%, 2026년 66.29%임
 - 이는 기존 대출을 반복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높은 재대출 비중은 제도 이용의 비정상성이라기보다, 출하 전 비용부담이 큰 양식업의 생산주기와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평균 대출잔액과 승인액 분포는 한도근접 자금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함
 -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약 9억 원 내외로 개인 한도 10억 원에 근접함
 - 승인액 구간별로는 0~2억 원 구간이 925건으로 가장 많으나, 8~10억 원 구간에서도 301건이 분포하여 대출건수가 다시 증가함
 - 이는 소규모 대출과 별도로 현행 한도에 근접한 고액 자금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줌
 - 다만 실제 한도제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액, 승인액, 실제 소요액, 담보여력, 타 대출 이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연체율은 제한적이나, 8~10억 원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대출 2,071건 기준 이자연체율은 3.5%, 원금연체율은 2.7% 수준임
 - 8~10억 원 구간의 이자연체율은 6.6%, 원금연체율은 5.3%로 다른 구간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한도근접 어가의 유동성 부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원 확대 시 위험관리와 사후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평균 금리는 2024년 2.673%, 2025년 2.446%, 2026년 2.287%로 하락하여 저리 정책자금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됨

▶ 지원 확대 필요성과 정책적 고려사항

- 제주어류 양식업의 생산비 구조와 자금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정교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산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동일한 명목 융자한도 내에서 총당 가능한 실제 운영비 규모는 감소함
 - 수면적, 입식량, 품목, 양식방식, 사육밀도 등에 따라 생산경비가 달라지므로, 단순 동일한 한도 중심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수면적이 넓거나 생산규모가 큰 어가는 총 생산경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실제 운영비 대비 정책자금 충족률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일괄적인 한도 상향보다는 품목별·양식방식별 수면적당 생산경비와 실제 운영비 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원 확대는 생산규모별 위험 차이와 금융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동일한 수면적이라도 입식량, 생존율, 양식기술, 출하전략, 시장가격에 따라 수익성과 상환능력은 달라질 수 있음
 - 잔액장 분석에서 8~10억 원 구간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생산규모가 큰 어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위험관리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면적당 생산경비를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하되, 실제 입식량, 생산실적, 출하 계획, 상환능력, 피해이력, 타 금융 이용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재대출 시 일부상환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는 정책자금 순환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치임
 - 그러나 양식업의 생산주기와 출하 전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원금 및 이자 연체가 없고 실제 경영 여부와 출하계획이 확인되는 어가에 대해서는 일부상환의무를

-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적용대상, 유예기간, 유예횟수,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자금의 장기 고착화와 형평성 문제를 방지해야 함
- 고수온 피해, 사료비 상승 가능성, 일반대출 의존 등을 고려한 보완적 지원체계도 필요함
 - 어획량 감소와 수산자원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어분·어유 등 사료 원료가격 상승을 통해 사료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 고수온 피해는 생산손실과 추가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피해 발생 직후의 유동성 공백을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연계가 필요함
 - 한도 부족으로 일반대출, 외상거래, 조기출하 등에 의존할 경우 금융비용과 경영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 확대는 물가와 생산비를 고려한 한도 조정 검토, 수면적당 생산경비 기반 차등지원, 성실납부자 재대출 기준 완화, 재해 대응형 긴급자금 연계, 정책자료 관리 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결론

- 양식업은 생산비 선투입과 출하 후 매출 발생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상시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존재함
 - 사료비와 전기료 등 주요 비용항목의 상승은 동일한 용자한도 내에서 조달 가능한 실제 운영비 규모를 축소시킴
 - 고수온 피해는 생산손실뿐 아니라 추가 비용과 상환재원 부족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음
 - 잔액장 분석에서는 높은 정책자금 이용도, 재대출 중심의 반복적 자금이용, 한도근접 대출 집중 현상이 확인됨
-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는 단순한 대출규모 확대가 아니라 제주어류 양식업의 생산주기, 비용구조, 기후위험을 반영한 경영안정 기능 강화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원 확대의 근거로는 생산비 상승, 실질 한도 하락,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 재대출 중심의 자금이용 구조, 고수온 피해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이차보전 재정 부담, 자금배분 형평성, 정책자금의 장기 고착화, 고액구간 연체율 등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임
 - 향후 제도개선은 일괄적 한도 상향보다 수면적당 생산경비, 실제 운영비, 상환능력, 피해이력 등을 반영한 차등적·조건부 지원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어업경영자금은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산정책금융 제도임
 - 어업경영자금은 시설투자보다는 어업경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어업인의 생산활동 유지와 경영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최근 제주어류 양식업은 사료비, 전기료, 인건비, 종자비 등 주요 운영비 상승과 고수온 피해, 질병, 폐사 등 기후위험확대에 직면하고 있음
 - 양식업은 입식이후 출하까지 일정한 생산기간이 필요하며, 출하 이전에도 사료비와 전기료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를 가짐
 - 이에 따라 비용 지출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 간의 차이가 크고, 출하지연이나 폐사 등 경영위험이 발생할 경우 단기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현행 어업경영자금 제도는 저리자금 공급을 통해 이러한 운영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비 상승과 기후위험 확대를 고려할 때 제주어류양식업의 실제 자금 수요와 현행 지원체계 간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측면 뿐 아니라 정책자금의 건전성, 이차보전 재정부담, 자금배분의 형평성, 사후관리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제주어류 양식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어업경영자금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현행지원 체계가 실제 자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 ▶ 분석범위는 어업경영자금 제도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제주어류양식업을 중심으로 실시함
- 제주어류양식 양식업의 자금수요는 생산주기, 비용구조, 출하 전 현금흐름, 고수온 등 기후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함
- 연구자료는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물가지수 자료, 고수온 피해 관련 자료, 현장 인터뷰, 제주어류양식수협 3개년 잔액장 자료를 활용함
- 본 연구의 특정 지역 양식수협의 사례자료를 활용하므로 분석결과를 전체 양식업 또는 전체 어업경영자금 이용자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제주어류 양식업 지원체계 검토 관점

- ▶ 제주어류 양식업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필요성은 자금수요, 정책효과, 금융건전성,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주어류 양식업의 실제 자금수요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어류 양식업은 사료비, 전기료, 종자비 등 운영비 비중이 높음
 - * 입식 이후 출하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출하 전까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 생산비 상승과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은 운전자금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명목상 한도와 공급규모뿐 아니라 실제 비용구조와 현금흐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원 확대의 정책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 확대는 단순한 대출규모 확대가 아니라 경영안정 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 제주어류 양식업에서는 정책자금이 출하 전까지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충분한 운영자금 확보는 조기출하 방지, 생산성 유지, 고금리 일반대출 의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금융건전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어업경영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확대는 정부의 이차보전 부담과 연결됨
 - 또한 대출 확대는 연체율 및 부실위험 관리와 함께 검토되어야 함
 - 특히 고액 대출이나 한도근접 어가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비 소요액, 상환능력, 출하계획, 재해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원 확대는 사후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와 병행되어야 함
- 넷째, 자금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어업경영자금은 한정된 정책자금이므로 영세어업인과 규모화 된 경영체 간 배분의 형평성이 중요함
 - 영세어업인에 대한 우선지원 기능은 유지하되, 규모화 된 양식업체의 실제 운영비 부담과 유동성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원 확대 여부는 특정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기보다 업종별 비용구조, 경영위험, 상환능력,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어류 양식업의 어업경영자금 이용실태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검토함
 - 제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원조건과 공급현황을 정리함
 - 현장 인터뷰를 통해 비용상승, 자금부족, 재대출 부담, 고수온 피해 등 현장 의견을 파악함
 - 제주어류양식수협 잔액장 자료를 통해 대출잔액, 재대출 비중, 승인액 구간별 분포, 연체율 등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건전성, 형평성, 사후관리 측면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

II 어업경영자금 제도 및 지원 현황

1. 어업경영자금의 개념과 기능

■ 어업경영자금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산정책금융 제도임

- 어업경영자금은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저리로 지원하여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임
 - 어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료비, 유류비, 전기료, 인건비, 어구비 등 경상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시설투자보다는 어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자금 성격이 강함
 - 어업인의 일시적 자금부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및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함
- 어업경영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됨
 - 어업인은 정책금리에 따라 일반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함
 - 금융기관은 정책금리와 일반대출금리 간 차이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구조임
 - * 이차보전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을 일정 수준 관리하면서도 어업인에게 저리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정부예산과 이차보전 규모에 따라 전체 공급 가능 규모가 제약될 수 있음

2. 주요 지원조건

■ 어업경영자금은 지원대상, 지원용도, 융자기간, 금리, 융자한도, 재대출 기준 등에 따라 운영됨

- 지원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법인임
 - 어업경영자금은 양식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등으로 구분됨
 - * 양식업경영자금은 어류·패류·해조류 등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금임
 - * 어선어업등경영자금은 조업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어구비, 인건비 등 출어 관련 운영비 지원성격이 강함
 -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어업 형태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짐

- 지원용도는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한정됨
 - 현행 제도상 어업경영자금은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 * 양식업의 경우 사료비, 종자비, 전기료, 약품비, 인건비 등 생산활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주요 대상이 됨
 - 제주어류 양식업은 출하 전까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이므로 운영자금 지원의 중요성이 큼
- 용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나, 양식업은 생산소요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일반적인 어업경영자금의 용자기간은 1년 이내임
 - * 양식업의 경우 생산소요기간이 2년 이상인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양식은 2년 이내로 적용될 수 있음
 - * 생산소요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적용됨
 -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
- 금리체계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운영됨
 - 양식업 및 어선어업 등 어업인은 고정금리 2.5%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법인의 경우 고정금리 3.0%가 적용됨
 -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어업경영자금은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 가구당·업체당 융자비율은 경영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영세어업인에 대한 지원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는 구조이나, 운영비 규모가 큰 양식업체의 경우 실제 필요자금 대비 지원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 * 경영비 2억 원 미만은 소요액의 100%까지 융자가 가능함
 -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2억 원에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를 더한 금액까지 융자가 가능함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4억 5,500만 원에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를 더한 금액까지 융자가 가능함
 - * 10억 원 이상은 8억 3,000만 원에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65%를 더한 금액까지 융자가 가능함

【가구당(업체당) 용자비율】

경영비 규모	용자비율
2억 원 미만	소요액의 100%까지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2억 원 +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4억 5,500만 원 +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10억 원 이상	8억 3,000만 원 +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 동일인당 용자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실제 용자 가능액은 소요액, 용자비율, 동일인당 한도, 타 정책자금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됨
 - *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이나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 다른 정책자금 이용 여부가 최종 용자한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제주어류 양식업과 같이 운영비 규모가 큰 업종에서는 동일인당 한도가 실제 자금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재대출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용자잔액을 보유한 경우 일부 상환의무가 적용됨
 - 정책자금의 장기 고착화를 방지하고 회수자금을 재배정하기 위한 장치임
 - * 용자잔액 5억 원 초과자는 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해야 함
 - * 용자잔액 10억 원 초과자는 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해야 함
 - 다만 생산주기가 길거나 출하 전 운영비 부담이 큰 양식업의 경우,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가 단기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어업경영자금 공급 현황

■ 어업경영자금은 소요액에 비해 실제 공급규모가 제한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2026년도 운용계획 기준 어업경영자금 총소요액은 7조 9,627억 원이며, 총공급액은 2조 9,2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공급률은 36.7% 수준임
 - 이는 제도상 산정된 소요액 전체가 실제 공급액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님을 보여줌
 - 어업경영자금은 한정된 재원과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소요액 대비 공급률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최근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임
 - 2024년 공급률은 44.1%였으나, 2025년에는 36.9%, 2026년에는 36.7% 수준으로 낮아짐
 - 2025년 대비 2026년 소요액은 증가하였으나, 공급액은 2조 9,200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됨
 - 이는 자금수요 증가분이 공급규모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함을 시사함
- 양식업경영자금은 어업경영자금 공급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함
 - 2026년 기준 양식업경영자금 공급액은 2조 원 수준임
 - 양식업은 사료비, 종자비, 전기료 등 운영비 규모가 크고 출하 전까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양식업경영자금은 양식어가의 생산활동 유지와 현금흐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소요액 자료는 어업경영자금 배정과 운용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임
 - 소요액 자료는 전체 자금수요 규모를 파악하고, 공급액 및 조합별 배정 규모를 검토하는 데 활용됨
 - 다만 최근 비용 상승, 고수온 피해,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 등은 소요액 자료와 함께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업경영자금 운용 계획 】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2025년(A)	2026년(B)	증감(B-A)
소 요 액	76,490	79,036	79,627	591
공 급 액	33,700	29,200	29,200	-
연근해 양식업	32,200	28,200	28,200	-
어선어업등	8,200	8,200	8,200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1,500	1,000	1,000	-
공 급 률	44.1%	36.9%	36.7%	△0.2%p

자료: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2024~2026년), 해양수산부

Ⅲ 양식업의 자금수요특성

1. 생산구조와 현금흐름

■ 양식업은 출하 전 비용 선투입 구조로 인해 상시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발생함

- 양식업은 입식·양성·출하의 생산과정을 거침
 - 입식 이후 어류가 출하 가능한 크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성기간이 필요한데, 양성기간 동안 사료비, 전기료, 약품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반면 판매수입은 출하 이후에 발생하므로 비용 지출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 간 차이가 큼
- 이러한 구조는 출하 전 운전자금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충분한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양성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금부족은 출하시점, 출하크기, 판매가격 등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양식업의 자금수요는 연간 총비용뿐 아니라 월별 현금흐름과 출하 전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비용구조와 물가상승 영향

■ 양식업의 건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은 품종, 양식방식, 기준단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2025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식업의 건당 소요액은 품종과 양식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동일한 양식업이라도 품종과 양식방식에 따라 필요 운영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어업경영자금 지원수준을 검토할 때에는 양식업 전체를 하나이 평균적 기준으로 보기보다, 품종별·양식방식별 비용구조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산경비 구성에서 사료비, 인건비, 종자비가 핵심 비용항목으로 나타남

- 사료비는 대부분 양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경비 항목으로 확인됨
 - 조피볼락, 넙치, 농어 등 어류 양식에서는 사료비가 전체 생산경비의 30~50% 수준을 차지함
 - ⇒ 사료가격 상승이 양식어가의 운영자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사료 원료 수급불안과 어획량 감소, 어분·어유 가격 상승 등이 지속될 경우 양식어가의 사료비 부담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 밖에도 인건비, 종자비, 운영관리비 역시 주요 비용항목으로 나타남

【양식업 건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내역(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조피볼락 (기준단위: 100㎡)	넙치		농어 (기준단위: 1ha)	새우	
		축제식 (기준단위 1ha)	육상수조식 (기준단위 :100㎡)		육상축제식 (기준단위: 1ha)	육상수조식 (기준단위: 100㎡)
종자비	6,646	7,039	10,540	15,734	16,258	9,227
시설유지비	4,442	7,558	7,291	3,181	10,377	2,015
보조선비	3,457	218	0	1,602	1,600	0
인건비	7,301	6,509	6,916	21,187	24,758	4,433
운영관리	1,035	8,495	12,936	5,290	12,260	7,171
사료비	16,194	30,125	19,550	12,085	46,842	6,869
복리후생	1,664	1,399	1,422	1,393	2,466	251
주부식비	941	597	601	2,012	4,482	834
잡비	338	710	1,456	773	3,401	363
계	42,737	62,650	60,712	63,258	122,445	31,162

출처: 2025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 결과보고서 일부 발췌

■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여러 차례 인상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양식어가 경영에 큰 부담을 줌

- 저압 전력량 요금 기준 2022년 39.1원/kWh(4월)에서 2025년 65.9원/kWh로 올랐으며³⁾, 최근까지 이어진 인상추세가 유지되고 있음⁴⁾

3) 2022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인상, 2023년 1월, 5월, 11월 세 차례 추가 인상, 2024~2026년 사이는 전기요금이 70% 대를 돌파한 이후, 2025년과 2026년에는 전력량 요금의 급격한 추가인상보다 주로 산업용 개편 및 피크타임 관리 위주로 전기요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출처 : 한국전력 과거전기요금표)

4) 박진규(2023, 2024)의 넙치 양식어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가의 연평균 전기료는 2021년 1억 3,697만 원에서 2023년 2억 1,468만 원으로 56.7%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매출액은 6,572만 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주요 경영비 부담은 크게

- 양식업(육상 양식장 등)에 주로 적용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누적 70.1% 인상됨⁵⁾

* 박진규(2024)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전기료 비율은 대략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서술함

■ 양식업은 사료비와 전기료 등 주요 운영비 비중이 높아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자금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양식업의 주요 비용항목은 사료비, 전기료, 종자비, 인건비, 약품비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사료비는 양성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핵심 비용임
 - 육상수조식 양식업은 해수를 끌어올리고 배출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하므로 전기료 부담도 구조적으로 발생함
 - 주요 비용항목은 매월 반복적으로 지출되므로 단기 운전자금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생산자물가 상승은 동일한 명목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실제 운영비 규모를 감소시킴
 - 어업경영자금의 명목 공급액이나 용자한도가 유지되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정책자금의 실질 구매력(실질 공급액)은 하락함

【생산자물가상승 및 실질공급액 규모】

(단위: %, 억 원)

기준 지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가 상승률	실질 공급액	물가 상승률	실질 공급액	물가 상승률	실질 공급액	물가 상승률	실질 공급액	물가 상승률	실질 공급액
총지수	6.38	24,347	8.38	23,766	1.58	23,397	1.68	28,300	1.15	24,242
수산물	-1.63	26,329	9.33	27,510	1.38	25,163	4.68	29,564	1.38	25,268
신선 수산물	1.25	25,010	4.68	25,803	1.90	23,604	-2.59	29,805	1.90	25,343

주: 실질공급액은 공급액을 해당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임

출처: KOSIS,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2021년 이후 생산자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의 동일 인당 용자한도는 2025년 기준 실질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1년의 개인 10억 원 한도는 2025년 실질가치로 약 8.5억 원 수준으로 감소함

확대되어 연평균 수익은 2021년 7,809만 원에서 2023년 △8,546만 원으로 악화되었다고 지적함. 다만 해당 자료는 2023년 추정치이자 41개 어가 설문조사 결과이므로, 전체 양식업을 대표하는 확정 통계라기보다 경영비 부담 확대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위해 여러 대책 추진, 농사용 전기요금 해수부 입장”(현대해양, 2024. 09. 09일자)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동일인당 용자한도 】

(단위: %, 억 원)

기준지수	2021년 기준 2025년 실질가치		
	개인(10억 원)	법인(15억 원)	실질가치 감소율
총지수 기준	약 8.83억 원	약 13.25억 원	약 11.7% 감소
수산물지수 기준	약 8.50억 원	약 12.75억 원	약 15.0% 감소
신선수산물지수 기준	약 9.44억 원	약 14.16억 원	약 5.6% 감소

주: 실질공급액은 공급액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임
출처: KOSIS,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따라서 현행 용자한도의 적정성은 명목금액만이 아니라 생산비 상승과 실질가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어류 양식업은 비용 선투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한도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 특히 규모화 된 양식장의 경우 실제 운영비 수요가 현행 한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생산비 상승률, 주요 비용항목 변화,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을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 검토가 필요함

3. 고수온 등 기후위험과 긴급자금 수요

■ 고수온 등 기후위험은 제주어류 양식업의 생산위험과 자금수요를 동시에 확대시키는 요인임

- 고수온으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피해규모도 큼
 - 2020년 1억 7천만 원, 2022년 4억 8천만 원, 2023년 20억4천만 원, 2024년에는 53억4천만 원, 2025년에는 52억 원으로 증가함⁶⁾
- 고수온은 폐사, 성장 지연, 질병 발생, 출하전략 변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약품비, 산소비, 폐사체 처리비, 재입식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
 - 폐사나 성장 지연은 출하시점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매출 발생 시점도 늦어질 수 있음

6) “제주 바다 더 오래 뜨거워진다...고수온 직격탄 양식장 피해 예방 ‘고심’”(경향신문, 2026.07.13.), “고수온 장기화 우려...제주 양식장 ‘비상’”(제민일보, 2026.07.13.), “28도 넘는 제주 고수온 양식장 11만마리 폐사...역대 최대 피해”(한겨레, 2026.05.16.), “양식장서 또 집단폐사...고수온 피해의심”(KBS뉴스, 2026.07.31.)

- 이 경우 기존 대출의 상환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추가 운영자금이나 상환유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재해위험 대응은 보험 및 사후복구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금이나 재해지원은 피해 발생 이후 보전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 경영현장에서는 피해 발생 직후 운영자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수온 피해 이후에도 사료비, 전기료,약품비, 재입식 비용 등은 계속 필요함
 - 따라서 재해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어업경영자금과 긴급 운영자금, 상환유예, 재대출 조건 완화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현장 인터뷰) 결과

■ 현장 인터뷰에서도 비용상승, 출하 전 자금부족, 융자한도, 재대출 부담, 고수온 피해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됨

- 양식어가가 체감하는 가장 큰 비용부담은 사료비와 전기료로 나타남
 - 인터뷰에서는 사료비 상승이 운영자금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기료 역시 육상수조식 양식업의 구조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 언급됨
 - 일부 대규모 양식장의 경우 월별 유지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의견도 제시됨
- 출하 전 자금부족은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터뷰에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어류를 충분히 성장시킨 뒤 판매하지 못하고 조기 출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판매단가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어업경영자금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양식어가의 생산전략과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융자한도와 재대출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인터뷰에서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한도가 최근 생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는 정책자금의 순환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출하 전 자금부족 상황에서는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7) 해당 인터뷰는 2026.06.19.에 양식업자 9명을 대상으로 수행함

- 특히 출하시점과 상환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반대출 이용이나 조기출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고수온 피해와 관련해서는 긴급자금 수요와 금융지원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
 - 인터뷰에서는 고수온 피해로 폐사, 성장 지연, 조기출하, 중간어 구입 등 경영 방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보험이나 재해지원이 존재하더라도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거나 지원 시점이 실제 자금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에 따라 고수온 등 재해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상환유예, 재대출 조건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타 제도운영상 의견으로는 채무인수, 담보평가, 자료관리 관련 애로가 제시됨
 - 공동경영, 사업승계, 인수양도 과정에서 기존 정책자금의 승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양식장 담보평가가 실제 환가성이나 용도제한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됨
- 이러한 사항은 지원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제도운영의 안정성과 사후관리 체계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 볼 수 있음

5. 소결

- 양식업의 자금수요는 생산비 상승,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 고수온 등 기후위험이 결합된 구조적 특성을 가짐
- 양식업은 생산비가 먼저 투입되고 매출은 출하 이후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단기 운영자금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 사료비와 전기료 등 주요 비용항목의 상승은 동일한 용자한도 내에서 실제로 조달 가능한 운영비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고수온 등 기후위험은 생산손실뿐 아니라 추가 비용과 상환재원 부족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어 긴급자금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양식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여부는 단순한 대출수요 증가가 아니라 생산구조, 비용구조, 기후위험, 현금흐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VI 제주어류양식수협 잔액장 분석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제주어류양식수협의 2024~2026년 어업경영자금 잔액장을 활용하여 제주어류 양식업의 정책 자금 이용실태를 분석함
 - 분석자료는 조합원별 어업경영자금 대출기록으로 구성됨
 - 분석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3개년임
 - 주요 분석항목은 조합원 수, 대출건수, 신규대출, 재대출, 대출잔액, 이자연체, 원금연체, 최종금리, 승인액 구간 등임
 - 분석은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현황과 대출건별 승인액 구간을 중심으로 수행함
 - 본 자료는 제주지역 특정 양식수협의 내부자료이므로 전국 양식업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제주어류 양식업의 실제 어업경영자금 이용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 특히 현장 인터뷰에서 제기된 한도근접, 재대출 의존,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 가능함

2. 어업경영자금 이용 규모

- 분석대상 조합원 전원이 어업경영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개인 한도에 근접한 수준임
 - 어업경영자금 이용 조합원 수는 2024년 259명, 2025년 258명, 2026년 258명으로 큰 변동이 없음
 - 해당 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어업경영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제주어류 양식업에서 어업경영자금이 선택적 보조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운전자금임을 보여줌

-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건수는 증가한 반면, 평균 대출잔액은 감소함
 - 1인당 평균 대출건수는 2024년 2.58건에서 2025년 2.70건, 2026년 2.74건으로 증가함
 - 반면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24년 9억 2,989만 원에서 2025년 9억 1,311만 원, 2026년 8억 9,572만 원으로 감소함
 - ⇒ 조합원이 복수의 대출을 활용하면서도,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 한도, 담보여력 등의 영향으로 잔액이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평균 대출잔액은 개인 동일인 한도인 10억 원에 근접한 수준임
 - 2024~2026년 평균 대출잔액은 약 9억 원 내외로 유지됨
 - 이는 상당수 조합원이 현행 한도에 가까운 수준에서 어업경영자금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단순히 대출 규모가 크다는 의미보다, 제주어류 양식업의 운영자금 수요가 현행 한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시사함

【 제주어류양식수협 어업경영자금 대출현황(동일인당 분석) 】

(단위: 명, 건, 만 원, %)

구분	2024년	(%)	2025년	(%)	2026년	(%)
조합원수	259	-	258	-	258	-
대출건수	2.58	-	2.70	-	2.74	-
신규	0.86	(33.23)	0.90	(33.43)	0.92	(33.71)
재대출	1.72	(66.77)	1.80	(66.57)	1.81	(66.29)
잔액	92,989	-	91,311	-	89,572	-
이자연체건수	0.07	(2.84)	0.11	(4.02)	0.10	(3.68)
원금연체건수	0.04	(1.65)	0.08	(2.87)	0.09	(3.40)
최종금리	2.673	-	2.446	-	2.287	-

주: 각 대출건수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 한 명 당 평균 대출 및 연체건수를 기록. 잔액 항목은 각 조합원이 이용 중인 대출의 총 잔액의 평균임

출처: 제주어류양식수협 내부자료

3. 신규대출과 재대출 구조

재대출 비중은 약 3분의 2 수준으로, 어업경영자금이 반복적 운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신규대출 비중은 2024년 33.23%, 2025년 33.43%, 2026년 33.71%임
 - 재대출 비중은 2024년 66.77%, 2025년 66.57%, 2026년 66.29%임

- 매년 약 3분의 2가 재대출로 구성된다는 점은 기존 대출을 반복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높은 재대출 비중은 양식업의 생산주기와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함
 - 양식업은 출하 이전까지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만, 매출은 출하 이후에 발생함
 - 따라서 어업경영자금은 일회성 대출보다 생산주기 전반을 버티기 위한 반복적 운전자금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함
 - 재대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제도 이용의 비정상성이라기보다, 양식업의 자금 수요가 상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4. 대출잔액과 융자한도 근접성

▶ 평균 잔액과 승인액 분포 모두 현행 개인 한도에 근접한 자금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줌

-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억 원 내외로, 개인 한도 10억 원과 가까움
 - 이는 제주어류 양식어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 특히 사료비, 전기료, 종자비 등 운영비 부담이 큰 양식업 특성을 고려할 때, 평균 잔액의 한도 근접성은 실제 자금수요가 한도에 의해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함
- 승인액 구간별로도 8~10억 원 구간에서 대출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2024~2026년 전체 대출 2,071건 중 0~2억 원 구간은 925건으로 가장 많음
 - 이후 2~4억 원 480건, 4~6억 원 222건, 6~8억 원 143건으로 감소함
 - 그러나 8~10억 원 구간은 301건으로 다시 증가함
 - 이는 소규모 대출과 별도로, 현행 개인 한도에 근접한 고액 대출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줌
- 8~10억 원 구간 집중은 한도근접 또는 한도제약 가능성을 시사함
 - 실제 필요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도상 한도로 인해 승인액이 10억 원 이하에 집중될 수 있음
 - 이 경우 부족분은 일반대출, 외상거래, 자기자금, 조기출하 등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액, 승인액, 실제 소요액, 담보여력, 타 대출 이용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승인액 구간별 대출건수(건당 분석)】

승인액 구간	대출건수(건)
0~2억	925
2억~4억	480
4억~6억	222
6억~8억	143
8억~10억	301
계	2,071

주: 본 분석은 대출건당 분석으로 1년에 약 600건씩 총 2,000여건을 분석한 것임

5. 승인액 구간별 연체율 및 금리

▶ 전체 연체율은 높지 않으나, 8~10억 원 구간에서는 이자 원금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대출 2,071건 기준 이자연체율은 3.5%, 원금연체율은 2.7% 수준임
 - 전반적으로 연체율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어업경영자금이 저리 정책자금으로서 일정 수준의 상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8~10억 원 구간에서는 연체율이 뚜렷하게 상승함
 - 0~8억 원 구간의 이자연체율은 대체로 2.8~3.6% 수준임
 - 반면 8~10억 원 구간의 이자연체율은 6.6%로 상승함
 - 원금연체율 역시 0~8억 원 구간에서는 2.1~2.7% 수준이나, 8~10억 원 구간에서는 5.3%로 높게 나타남
 - 이는 한도근접 어가에서 유동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고액구간의 연체율 상승은 지원 확대 논의와 함께 위험관리 필요성도 제기함
 - 8~10억 원 구간은 실제 자금수요가 크거나 한도에 근접한 어가가 분포할 가능성이 큰 구간임
 - 이들 어가는 생산비 상승, 고수온 피해, 출하 지연 등 충격 발생 시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지원 확대를 검토하더라도 한도근접 어가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출하계획, 재해피해 여부, 타 금융 이용상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승인액 구간별 연체율과 재대출 비율(건당 분석) 】

승인액 구간	이자연체	원금연체	재대출	대출건수(건)
0-2억	0.029	0.021	0.648	925
2억-4억	0.029	0.023	0.66	480
4억-6억	0.036	0.027	0.712	222
6억-8억	0.028	0.021	0.692	143
8억-10억	0.066	0.053	0.681	301
계	0.035	0.027	0.665	2071

주: 본 분석은 대출건당 분석으로 1년에 약 600건씩 총 2,000여건을 분석한 것임

- 평균 금리는 2024년 2.673%, 2025년 2.446%, 2026년 2.287%로 하락함
 - 어업경영자금은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제공되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 다만 현장 자금수요 측면에서는 금리수준뿐 아니라 한도, 재대출, 상환시점, 유동성 확보 가능성이 함께 중요함
 -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부족분을 일반대출 등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전체 금융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

【 제주어류양식수협 어업경영자금 대출금리(동일인당 분석) 】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최종금리	2.673	2.446	2.287

출처: 제주어류양식수협 내부자료

6. 분석결과와 시사점

- ▶ 잔액장 분석은 제주어류 양식업에서 어업경영자금이 상시적 운전자금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첫째, 조합원 전원이 어업경영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 어업경영자금은 일부 어가의 선택적 금융수단이 아니라 제주어류 양식업의 기본적인 경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 둘째, 재대출 비중이 약 67% 수준이라는 점은 반복적 자금이용 구조를 보여줌
 - 양식업의 생산주기와 출하 전 비용부담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임
 - ⇒ 어업경영자금은 단기 대출보다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순환적 운전자금 성격이 강함
 - 셋째, 평균 잔액과 승인액 분포는 한도근접 자금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함
 - 평균 대출잔액은 개인 한도 10억 원에 가까운 9억 원 내외로 나타남
 - 8~10억 원 구간에 대출건수가 다시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됨
 - ⇒ 현행 한도가 일부 양식어가의 실제 운영자금 수요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줌
 - 넷째, 고액구간의 연체율 상승은 지원 확대와 건전성 관리를 함께 검토해야 함
 - 8~10억 원 구간에서 이자연체율과 원금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한도근접 어가의 유동성 부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원 확대 시 사후 관리와 위험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제주어류 양식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는 생산비 상승과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으나, 한도 상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재대출 구조, 상환시점, 긴급자금 연계, 연체위험 관리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V 지원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지원 확대 필요성

■ 제주어류 양식업의 생산비 구조와 자금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정교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산비 상승으로 실질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양식업은 사료비, 전기료, 종자비,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높은 산업임
 - 특히 양식업은 입식 이후 출하 전까지 사료비와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생산비 상승은 곧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 생산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동일한 명목 용자한도 내에서 실제로 충당할 수 있는 운영비 규모는 감소하게 됨
 - ⇒ 어업경영자금의 지원수준을 검토할 때에는 명목 한도뿐만 아니라 생산비 상승과 실질 자금수요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면적당 생산경비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기준 검토가 필요함
 - 양식업의 생산경비는 수면적, 입식량, 품목, 양식방식, 사육밀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경영규모가 크거나 수면적이 넓은 어가는 사료비, 전기료, 종자비 등 총 생산경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동일한 명목 한도 적용 시 실제 운영비 대비 정책자금 충족률이 낮아질 수 있음
 - * 이 경우 부족한 운영자금을 일반대출, 외상거래, 자기자금, 조기출하 등으로 보완해야 하므로 금융비용과 경영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논의는 일괄적인 한도 상향보다, 품목별·양식방식별 수면적당 생산경비와 실제 운영비 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기준 검토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동일한 수면적이라도 입식량, 생존율, 사육밀도, 양식기술, 출하전략, 시장가격에 따라 수익성과 상환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면적만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8~10억 원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생산 규모가 큰 어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입식량, 출하계획, 상환능력, 피해이력, 타 금융 이용상황 등을 함께 확인하는 위험관리 체계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성실납부자 대상 재대출 일부상환기준 유예 검토
 -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는 정책자금 순환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나, 양식업의 생산주기와 출하 전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일정기간 원금 및 이자 연체가 없고, 실제 양식업 경영 여부와 출하계획이 확인되는 어가에 대해서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고수온 피해, 출하지연, 가격하락 등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5% 또는 10% 일부상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성실납부 이력과 상환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예·완화하는 방식이 필요함
 - * 다만, 일부상환기준 유예는 정책자금의 장기 고착화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 유예기간, 유예횟수,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이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어가의 일시적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책 자금의 건전성과 자금 순환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명목 용자한도의 실질가치 하락도 지원 확대 검토의 근거가 됨
 - 현행 동일인당 용자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물가와 생산비가 상승하면 동일한 명목금액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실제 운영비 규모는 감소함
 - 특히 사료비와 전기료처럼 양식업 경영에 필수적인 비용이 상승할 경우, 용자한도의 실질 지원효과는 더 빠르게 약화될 수 있음
 - ⇒ 용자한도 적정성은 명목금액 기준이 아니라 생산자물가, 수산물 생산자물가, 사료비·전기료 등 주요 비용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어획량 고갈 및 수산자원 감소는 사료비 부담을 추가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해수어류 양식업에서 사료비는 생산경비 중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함
 - 사료 원료로 활용되는 어분·어유 등 수산자원의 공급 여건이 악화되거나 어획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사료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
 - 이 경우 양식어가는 단순한 일반 물가상승뿐 아니라 사료 원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비용상승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음

- ⇒ 향후 어업경영자금 지원수준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의 생산비뿐 아니라 사료비 상승 가능성, 원료 수급 불안정, 국제 수산자원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이 지원 확대 필요성을 높임
 - 양식업은 생산비가 먼저 투입되고 매출은 출하 이후 발생하는 구조로 출하시점은 성장상태, 시장가격, 수온, 질병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회수 시점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함
 - 충분한 운전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류를 적정 크기까지 양성하지 못하고 조기 출하하거나, 부족분을 고금리 일반대출로 조달할 가능성이 있음
 - ⇒ 지원 확대 여부는 단순한 대출수요 증가가 아니라 양식업의 생산주기와 현금 흐름 구조를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잔액장 분석에서도 한도근접 자금수요가 확인됨
 - 제주어류양식수협 잔액장 분석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약 9억 원 내외로 개인 한도 10억 원에 근접한 수준임
 - 승인액 구간별로도 8~10억 원 구간에서 대출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이는 일부 어가의 실제 자금수요가 현행 한도에 근접해 있거나, 한도에 의해 제약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특히 수면적이 넓고 생산규모가 큰 어가일수록 총 생산경비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한도근접 현상은 경영규모와 생산비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고수온 등 기후위험도 긴급 자금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임
 - 고수온 피해는 폐사, 성장 지연, 질병 발생, 출하 지연 등을 통해 생산성과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침
 - 피해 발생 시 약품비, 산소비, 폐사체 처리비, 재입식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 운영자금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일시적 유동성 공백을 완화할 수 있는 긴급자금 연계가 필요함

2. 지원 확대의 기대효과

▶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또는 지원기준 정교화는 제주어류 양식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실제 생산경비에 근접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수면적당 생산경비 차이를 고려하면, 어가별 실제 운영비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이는 동일 한도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비용부담과 지원수준 간 괴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생산규모가 크고 출하 전 비용부담이 큰 어가의 경우, 자금부족에 따른 일반 대출 의존이나 조기출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 경영안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충분한 운전자금은 출하 전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양식업은 생산비 선투입 구조를 가지므로, 운영자금 확보는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생산계획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다만 경영안정 효과는 지원규모뿐 아니라 지원대상 선정, 상환구조, 사후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기출하 및 생산성 저하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
 - 자금부족이 심할 경우 어류를 적정 크기까지 성장시키지 못하고 조기 출하할 가능성이 있음
 - 운영자금 여력이 확보되면 출하시점을 보다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수익성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조기출하는 시장가격, 수온, 질병, 양식장별 경영전략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정책자금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고금리 일반대출 의존을 완화할 수 있음
 - 현행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어가는 일반대출, 외상거래, 자기자금 등에 의존할 수 있음
 - 어업경영자금은 저리 정책자금이므로, 지원 확대 또는 지원기준 조정은 전체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생산규모가 큰 어가는 총 운영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대출 병행 시 금융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 기후위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 고수온 피해 발생 시 생산손실과 추가비용이 동시에 발생함
 - 어업경영자금과 긴급 운영자금, 상환유예, 재대출 조건 완화가 연계될 경우 피해 발생 이후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다만 재해지원과 일반 경영자금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복지원 방지 및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지원 확대 시 고려사항

➤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나 생산규모별 위험 차이와 금융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함

- 생산규모가 큰 어가의 자금수요와 연체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수면적, 입식량, 사료 투입량, 전력 사용량 등이 증가하여 총 생산경비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규모가 큰 어가는 실제 자금수요가 크고, 현행 한도에 더 빨리 근접할 수 있음
 - 그러나 잔액장 분석에서는 8~10억 원 구간의 이자연체율과 원금연체율이 다른 구간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생산규모가 큰 어가가 더 많은 자금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동시에, 경영상 충격 발생 시 유동성 위험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수면적당 생산경비, 출하계획, 상환능력, 피해이력, 타 금융 이용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함
- 수면적당 차등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 면적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수면적은 양식업의 생산규모와 비용부담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수면적이라도 품목, 사육밀도, 입식량, 양식기술, 생존율, 출하 전략 등에 따라 실제 생산경비와 상환능력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수면적당 생산경비를 지원기준에 반영하되, 실제 입식량, 생산실적, 비용 자료, 출하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기준이 필요함
- 이는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함
 - 어업경영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지원규모 확대는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연결됨
 - 따라서 한도 상향이나 공급규모 확대는 예상 수요, 이차보전 소요, 정책효과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함
- 정책자금의 장기 고착화 가능성을 관리해야 함
 - 채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은 양식업의 반복적 운전자금 수요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정책자금이 장기간 고착화될 가능성도 시사함
 - 따라서 반복 이용이 실제 생산주기와 비용구조에 따른 것인지,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자금순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양식업의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하는 균형 있는 운용이 요구됨
- 연체율 및 금융건전성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 전체 연체율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8~10억 원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도근접 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상환능력, 출하계획, 재해피해 여부, 타 대출 보유 여부, 담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함
- 영세어업인과 규모화 경영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어업경영자금은 한정된 정책자금이므로 자금배분의 형평성이 중요함
 - 영세어업인 우선지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규모화 된 양식업체의 실제 운영비 부담과 유동성 위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원기준은 단순히 규모가 큰 어가를 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생산 경비와 경영위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4. 정책 개선방향

▶ 제주어류 양식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괄적 한도 상향보다 수면적당 생산경비와 위험요인을 반영한 차등적 조건부 지원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면적당 생산경비를 반영한 차등지원 기준 검토
 - 제주어류 양식업은 양식장 규모와 수면적에 따라 생산경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동일인당 한도와 별도로, 수면적당 표준 생산경비 또는 주요 비용 항목을 참고한 보완적 지원기준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수면적만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경우 과잉지원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식량, 생산실적, 비용자료, 출하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물가상승률과 사료비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한도 조정 검토
 -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의 명목한도는 생산비 상승에 따라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 특히 어획량 감소와 수산자원 공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사료 원료가격 상승을 통해 사료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때 생산자물가뿐 아니라 사료비, 전기료 등 핵심 비용지표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생산규모별 차등지원과 위험관리의 병행
 - 생산규모가 큰 어가는 운영비 부담이 큰 만큼 지원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구간과도 관련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액·한도근접 어가에 대해서는 단순 한도 상향보다 별도 심사와 사후관리 조건을 붙인 차등지원 방식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어가에 대해서는 출하계획, 재무상태, 피해이력, 타 대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한 후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의 탄력적 운용 검토
 - 재대출 시 일부 상환의무는 자금순환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치임
 - 다만 고수온 피해, 출하 지연,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환유예, 분할상환, 차등 적용 등 탄력적 운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고수온 피해 대응형 긴급 운영자금 연계
 - 고수온 피해는 생산손실과 추가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음
 - 피해 발생 이후 보험금이나 재해지원금 지급 전까지 유동성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어업경영자금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재해지원, 보험제도를 연계하여 피해 발생 직후의 자금공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자료 관리체계 강화
 - 수면적, 입식량, 생산실적, 사료비, 전기료, 대출잔액, 재대출 이력, 연체 여부, 피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자료가 연계될 경우 수면적당 생산경비와 실제 자금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향후에는 지원 확대의 효과와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기반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5. 소결

▶ 제주어류 양식업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는 생산비 상승, 수면적당 생산경비 차이, 한도근접 현상, 고수온 피해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검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생산규모가 큰 어가는 운영비 부담이 큰 동시에 일부 구간에서 연체율도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 확대는 단순한 일괄 한도 상향 방식보다는 차등적·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수면적당 생산경비를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하되, 실제 입식량, 생산실적, 출하 계획, 상환능력, 피해이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함
- 또한 어획량 감소와 사료 원료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사료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원기준에는 주요 비용항목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물가와 생산비를 고려한 한도 조정 검토, 수면적당 생산 경비 기반 차등지원, 고액·한도근접 어가에 대한 위험관리, 재해 대응형 긴급자금 연계, 정책자료 관리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VI 결 론

1. 주요 분석결과

■ 양식업은 생산구조상 상시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존재함

- 양식업은 입식 이후 출하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출하 전까지 사료비, 전기료, 종자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임
- 반면, 매출은 출하 이후에 발생하므로 비용 지출 시점과 자금 회수 시점 간 불일치가 나타남
- 이러한 구조로 인해 어업경영자금은 일시적 대출수단이 아니라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반복적 운전자금으로 기능하고 있음

■ 생산비 상승과 고수온 피해는 실질 자금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물가상승과 사료비·전기료 등 주요 비용항목의 상승은 동일한 명목한도로 충당 가능한 실제 운영비 규모를 축소시킴
- 고수온 피해는 폐사, 성장 지연, 질병 발생, 출하 지연, 재입식 비용 등으로 이어져 일반 운영자금 외에 추가적인 유동성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제주어류 양식업의 자금수요는 단순한 대출수요가 아니라 생산비 상승과 기후위험이 결합된 경영안정 수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잔액장 분석 결과, 어업경영자금의 높은 이용도와 한도근접 현상이 확인됨

- 제주어류양식수협 잔액장 분석 결과, 조합원 전원이 어업경영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재대출 비중은 약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남
-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개인 한도 10억 원에 근접한 9억 원 내외로 나타났으며, 승인액 8~10억 원 구간에서도 대출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
 - 이는 일부 어가의 자금수요가 현행 한도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 다만 고액·한도근접 구간에서는 위험관리 필요성도 함께 확인됨

- 승인액 8~10억 원 구간에서는 이자연체율과 원금연체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생산규모가 큰 어가가 더 큰 자금수요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경영상 충격 발생 시 유동성 위험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지원 확대는 단순한 일괄 한도 상향이 아니라 상환능력, 출하계획, 피해이력, 타 금융 이용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차등적 방식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시사점

▶ 양식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지원은 생산주기와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원체계는 저리 운영자금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양식업의 생산비 선투입 구조와 출하 전 현금흐름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수면적, 입식량, 품목, 양식방식에 따라 생산경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동일인 한도 중심의 접근보다 수면적당 생산경비와 실제 운영비 규모를 고려한 보완적 기준 검토가 필요함

▶ 지원 확대는 경영안정 효과와 금융건전성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생산비 상승, 실질 한도 하락, 재대출 중심의 자금이용 구조, 고수온 피해 확대는 지원 확대 검토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다만 정책자금 확대는 이차보전 부담, 자금배분 형평성, 정책자금의 장기 고착화, 연체율 관리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함
- 고액·한도근접 어가에 대해서는 일률적 확대보다 실제 자금수요와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별도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함

■ 향후 제도개선은 차등적·탄력적 운용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물가상승률과 사료비·전기료 등 주요 생산비 변화를 고려한 용자한도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수면적당 생산경비, 입식량, 출하계획, 피해이력 등을 반영한 차등적 지원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재대출 시 일부상환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운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고수온 피해 등 재해 발생 시에는 어업경영자금과 긴급 운영자금, 상환유예, 재해 지원, 보험제도를 연계하여 일시적 유동성 공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자료 관리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향후 지원 확대 여부와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잔액장, 수면적, 입식량, 생산실적, 사료비·전기료, 연체정보, 재해피해 자료 등을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지원 필요성이 큰 어가와 위험관리가 필요한 어가를 구분하고, 제주어류 양식업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 운용방식을 설계해야 함

【참고문헌】

문헌자료

해양수산부(2024), 2024년도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_____ (2025),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_____ (2026), 2026년도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수산경제연구원(2025),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결과보고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진규(2024), 양식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필요성 검토, 이슈포커스 2024-02호,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2024), 어업경영자금의 어업분류 검토, 이슈포커스 2024-02호, 수협중앙회 수산
경제연구원

수산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2026-02호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행인	회장	노동진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이종화			
수산경제연구원	전화	(02) 2240-0426			
연락처	팩스	(02) 2240-0420			
	홈페이지	http://fei.suhyup.co.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발행일	2026. 0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